

 신안산대학교	반려동물보건과 운영 규정	규정 번호	4-1-50
		제정 일자	2023. 12. 7.
		개정 일자	2024.4.15.
		책임부서/팀	교무처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.)의 학칙에 준용하여 반려동물보건과(이하 ‘학과’라 한다.)의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학사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24.4.15. 개정>

제2조 (교육목적)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의 생명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동물의 건강과 복지, 간호, 질병치료 및 예방, 통증경감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학문적인 역량과 도덕적 인성을 갖춘 최고의 동물보건사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학과장의임무) ① 학과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학과장은 학과 운영관련 제반사항을 총괄한다.

② 구체적인 임무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과의 의견이 본 대학교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전달
2. 학과 운영과 관련된 정책결정, 인사 및 예산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
3. 학과를 대표하여 대외활동 참여 및 협력관계 구축
4. 학과의 장·단기 발전계획 수립
5. 기타 학과 내 전반적 업무에 관한 사항

제4조 (학과 교수회의) ① 학과 교수회의는 학과의 전반적 운영사항을 논의한다.

② 구성은 전임교원 전체로 하며, 필요에 따라 학과의 교육에 참여하는 교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.

③ 매학기 1회 이상의 정기회의 및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.

④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한다.

제5조 (교원의 임무) ① 전임교원은 반려동물보건과의 교육, 연구 및 보건 관련 분야의 봉사에 임한다.

② 학과교수회의를 통해 분담 받은 학생의 대학생활, 학사, 학과적응, 취업, 진로에 관한 지도를 시행한다.

③ 전임교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서 각 위원회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과 운영의 세부사항을 심의하고 학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한다.

제6조 (학과위원회) ① 학과는 학과 운영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 보직 변경의 사유가 있을 때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③ 위원장은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선출되며, 위원회의 정기적 회의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 회의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,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한다.

⑤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.

제7조 (행정인력) ① 학과에는 행정인력으로 조교를 둔다.

② 조교는 본 대학교가 정하는 자격에 준한다.

③ 조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조교는 학사 및 학생교육에 필요한 사무, 학생지도와 관련된 보조 업무, 실험실습교육 보조 업무, 취업관리, 기타 학사관련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.

2. 구체적인 업무는 업무분장 내역을 따른다.

④ 조교의 임용, 급여 및 휴가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8조(장학금 지급) 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에 따라 반려동물보건과 등록금 총액 대비 매년 교내 장학금 비율 10%이상 반려동물보건과 학생들에게 지급한다.<2024.4.15. 개정>

② 장학생 선발기준은 장학규정 및 장학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.

제9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, 학사규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